



순찰업무



순찰업무란?

순찰업무는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혹은 불규칙적으로 건물 내외부의 화재 예방, 도난방지 등의 이상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건물관리업무 구분 ●

건물관리업무는 크게 시설관리, 청소, 경비의 세 분야로 구분된다.

- 시설관리 : 기계, 전기, 방재, 영선으로 구분
- 건물청소 : 일상적인 청소업무와 일정주기로 실시하는 대청소, 물탱크 및 건물외벽의 유리창 등 특수 구역의 청소로 구별
- 건물경비 : 건물 내 입출입자 통제, 건물 내 · 외부 순찰, 건물 내 주차관리업무를 담당

● 건물관리업의 특성 ●

-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전문용역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업체로의 업무이양은 건물관리 업무의 전문화 체계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건물관리 용역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용역단가가 낮아진 결과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령근로자가 종업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경비업무는 교대근무를 하며, 청소작업에는 여러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보건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재해의 대부분이 넘어짐, 추락 등 단순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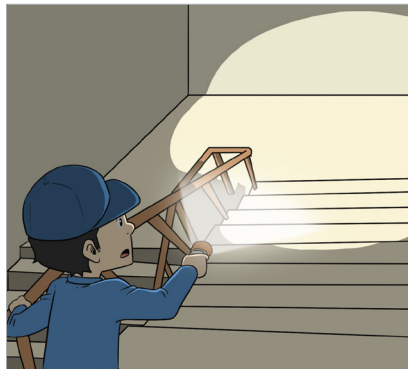
- ✔ 순찰시 통로의 개구부 방치 및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충돌 · 추락 · 전도
- ✔ 통로의 조명시설 미비로 인한 충돌 · 추락 · 전도
- ✔ 단지 내 통행 차량과의 충돌
- ✔ 눈 · 비 · 빙판길 순찰 중 넘어짐
- ✔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 중 전도 · 충돌

안전대책

- 계단 경사로 등 통로상 위험요인 제거
 - 답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인 경우 개선 또는 주의표지판 부착
 -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대 설치
 - 통행에 충분한 조도 유지(통로 기준 75럭스(Lux) 이상)
- 순찰점검 통로 안전조치
 - 야간경비 순찰 및 점검 통로에는 평상시 적치물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정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
 - ※ 필요시 위험장소에 야광 안전표지 등 부착
 - 통로상의 개구부 또는 임시 보수장소 등에는 식별 가능한 위험표지판 설치
 - ※ 인수인계 시 순찰통로상의 위험요인 전달, 가설덮개 또는 방책 등 설치
 - 순찰을 위한 개인 휴대용 조명등은 고광도의 손전등 지급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눈, 비에 의한 전도재해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안전화 등 지급 및 착용 관리
 -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시 안전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순찰경로 정리정돈



통로 및 계단 시야확보



근무교대 시 위험요인 인수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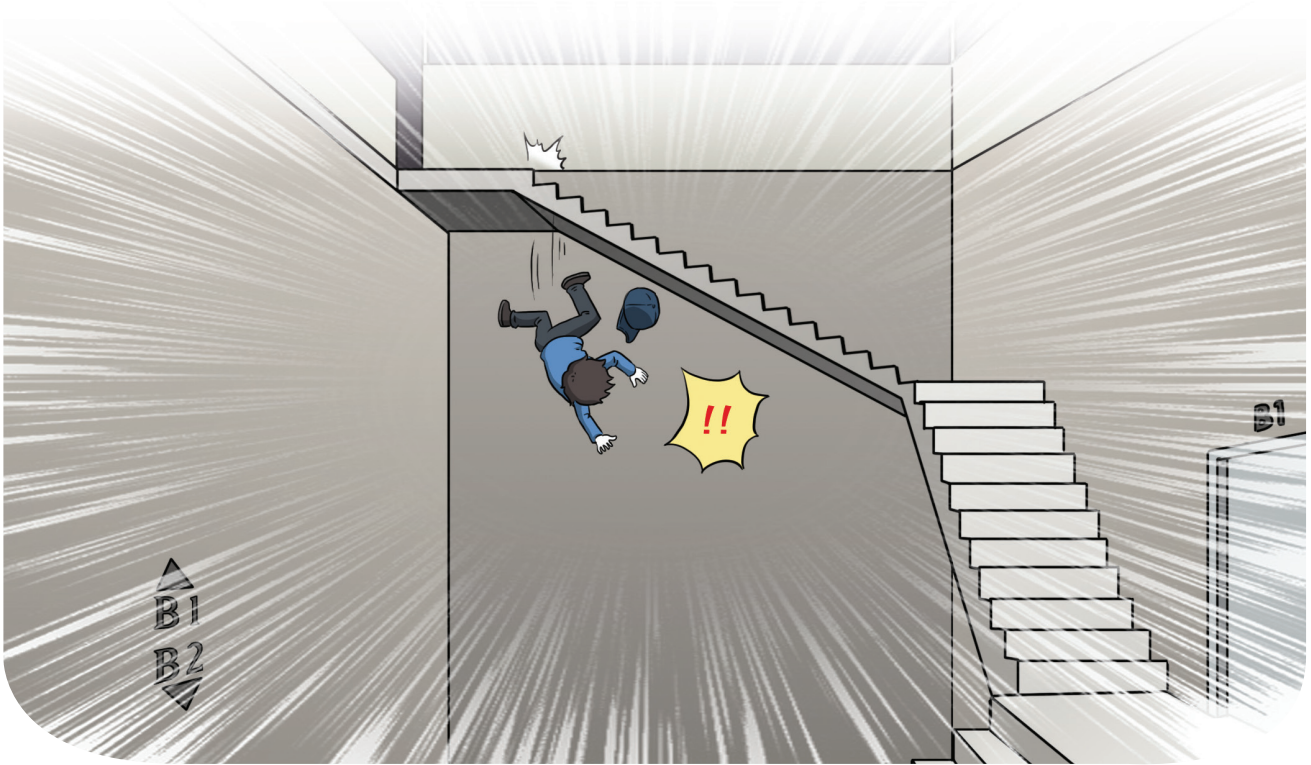




재해사례 : 건물 순찰 중 계단에서 추락

개요

경비원인 피해자가 건물 순찰 중 높이 2층 정도의 계단에서 실족 추락하여 사망



발생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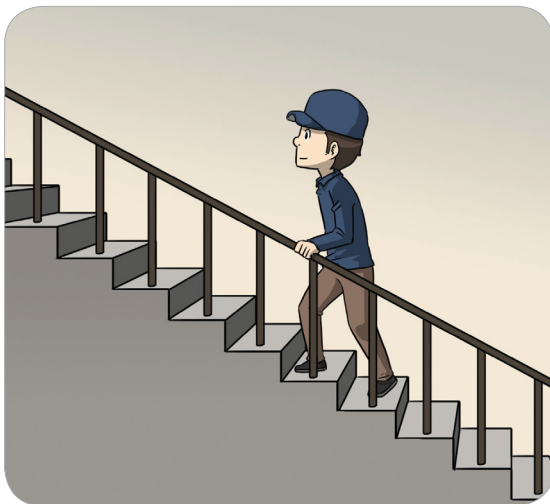
- 추락 방지시설 설치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순찰 시 필요한 작업안전수칙 등 사고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주기적인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관리 실시





안전수칙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고 통행한다.
- 야간 순찰시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장비를 착용한다.
- 어두운 곳을 순찰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 어두운 곳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순찰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안전모, 안전화 등)
- 통로 및 계단 등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순찰 시 바닥이나 통로의 장애물 확인을 철저히 한다.
- 계단의 파손부위 확인 및 미끄럼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안전난간 설치 및 손잡이를 잡고 이동



야광조끼, 야광봉 등 착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 제22조 (통로의 설치)
 - 제26조 (계단의 강도)
 -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제21조 (통로의 조명)
 -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 KOSHA GUIDE G-85-2012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26-2011 사업장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